

제311회 임시회
2012. 6. 22(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 6. 22(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2년 6월 4일
- 회부일자 : 2012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2012년 6월 13일

-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성조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북도 장학시설 '청람재'와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시설물 명칭 유사성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시설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람재의 시설명칭 변경
 - ‘청람재’ ⇒ ‘충북학사 청람재’(안 제1~2조)
- 기타 현실 불부합 조문 정비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 청주시 소재 장학시설인 ‘청람재’의 명칭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별장 ‘청남대’와 명칭이 유사함에 따라 일부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민원편의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청람재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람재(이하 “학사“라 한다)”를 “충북학사 청람재”로 한다.

제2조 중 “청람재”를 “충북학사 청람재(이하 “학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을”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학사 및 농촌출신학생 기숙사인 <u>청람재</u>(이하 “<u>학사</u>”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충북학사 청람재</u>----- ----- -----.</p>
<p>제2조(위치) 충북학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당산동) 충북미래관 내에 두고 <u>청람재</u>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7(지북동)에 둔다.</p>	<p>제2조(위치) ----- ----- ----- <u>충북학사 청람재</u>(이하 “<u>학사</u>”라 한다)----- -----.</p>
<p>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u>기타</u>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p>	<p>제3조(기능)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 -----</p>
<p>제6조(운영법인의 책무) ① ~ ③ (생략)</p> <p>④ 운영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 관련 <u>규정에</u>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 운영법인이 <u>제2항 내지 제4항</u>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p>	<p>제6조(운영법인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규정에 따른</u> ----- -----.</p> <p>⑤ -----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p>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승인 등) 운영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 3. (생략)
- 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감독)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운영법인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운영법인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생략)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승인 등) -----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제8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규칙) ----- 시행에 ---

-----,

관련규정 발췌

□ 재단법인 충북학사 사무국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5. “장학시설”이라 함은 충북학사 및 충북학사 청람재를 말한다

□ 충북학사 청람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충북학사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학사 청람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사”라 함은 충북학사 청람재를 말한다